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수입징수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 지역협력과 과태료징수관 (전화: 051-559-6693)

자진납부고지서 재중

※ 타인수령시 본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608호

(주)엠지엘건설(고상혁)

48059

부과 내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산출근거

1. 귀 사에서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광안, 남천동 일원)]'에서 발생한 2025년 8월분 2,639,000원을 미납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01-19-2603-1574-7537-592

실명번호: 180111-1*****

납부자 (주)엠지엘건설(고상혁)

주소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608호

세 목	납기 내	비 고
	2026년 10월 30일	
과태료	800,000 원	* 납기 후 수납불가
합 계 금 액	800,000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경히 영수 합니다.

담당자 : 노동기준조사2과 김영미 (051-559-6624)

출력일자 : 2026년 10월 0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수입징수관

년 월 일 수납인

안내 말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https://ifine.moe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가상계좌(농협은행 계좌)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 가능

◆ 오픈뱅킹(타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 이체 납부 불가

◆ 현재 금액은 20% 감경된 것으로 납부 후 의견제출, 이의제기 불가능. 납기 도과 시 정식부과 진행됩니다.

◆ 가상계좌안내: 농협은행

790-3141-7414-651

* 예금주 : "고용-(주)엠지엘건설(고상혁)"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01-19-2603-1574-7537-592



0119260315747537592

회계년도 : 2026 회계 : 일반회계 소관: 고용노동부

납부자 : (주)엠지엘건설(고상혁) 실명번호 : 180111-1*****

금융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563)	납기 내	비 고
			2026년 10월 30일	
001	031574-1	과태료	800,000 원	* 납기 후 수납불가
합 계 금 액			800,000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노동기준조사2과 김영미 (051-559-6624)

출력일자 : 2026년 10월 0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수입징수관

수납인

위반법조항 및 위반내용(사전통지 관련)

당 사 자	사업체명	(주)엠지엘건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80111 - 1407477
	성명	(주)엠지엘건설(고상혁)
	주소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608호
위반법조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내용		귀 사에서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광안, 남천동 일원)]'에서 발생한 2025년 8월분 2,639,000원을 미납

〈의견진술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실 및 의견진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 기한(납기 내)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고지서 “합계금액”란의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미리 경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6. 우리청(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쪽 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우측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

※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음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위반사실)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